

貨換信用狀去來에서 通知銀行의 責任과 免責에 관한 研究

張 興 勳*

目 次

I. 序 論	免 責
II. 通知銀行의 責任	1. 書類의 送達中 紛失할 때 損害賠償問題의 경우
1. 換去來約定契約의 法的效力	2. 書類翻譯의 錯誤時 損害賠償問題의 경우
2. 通知銀行이 信用狀發行通知를 依賴받았을 경우의 責任	3. 發行銀行의 指示대로 정확히 通知하지 않은 경우
3. 通知銀行의 眞正性 確認에 대한 責任	4. 通知銀行에게 어음의 支給· 引受· 買入을 依賴한 경우
4. 通知銀行이 어음을· 支給· 引受· 買入할 責任	IV. 結 論
III. 通知銀行의 責任의 限界와	

I. 序 論

信用狀이 실제로 發行되었어도 賣渡人에게 傳達되지 않는다면 賣渡人은 信用狀의 發行事實이나 그 內容에 관하여 알 수 없으므로 船積을 履行할 수 없게 된다.

오늘날 通信手段의 혁신적인 발달로 과거와는 다르게 信用狀의 通知가 신속하게 受益者에게 傳達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送信이나 受信上의 不確實性, 遲延, 毀損, 誤謬 등으로 인하여 원래 信用狀의 發行意圖와는 다르게 傳達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더욱이 通知의 任務를 遂行하고 있는 通知銀行의 過失이나 送付된

* 中央大學校 貿易學科 講師, 經營學博士.

信用狀의 確認을 소홀히 하고, 또한 그 信用狀에 대한 眞正性(authenticity)의 與否를 判別하지 못하여 受益者에게 치명적인 損害를 끼치는 事例가 發生하기도 하므로 通知銀行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信用狀의 通知는 실제로 發行銀行의 依賴와 指示에 의하여 處理되므로 通知銀行은 受益者에게 信用狀이 發行되었다는 事實을 아무런 確約없이 受益者에게 通知할 뿐 그 외의 특별한 權利와 義務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通知銀行의 權利와 義務는 發行銀行으로부터 接受하게 되는 指示條件과 그 履行에 따른 內容에 의해 追加되기도 하므로 本論文에서는 通知銀行의 法的 地位와 責任 및 免責에 대한 것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通知銀行의 責任

1. 換去來約定契約의 法的效力

信用狀이 發行되면 發行銀行은 일반적으로 受益者 所在地의 發行銀行의 本·支店이나 換去來銀行(Correspondent Bank)을 통하여 通知를 하게 마련인데 이러한 發行銀行의 依賴와 指示에 따라 受益者에게 信用狀의 發行을 通知하는 銀行을 通知銀行이라고 한다.¹⁾ 發行銀行은 信用狀을 發行하면 그 信用狀을 通知할 銀行을 選擇하여 指定하게 된다. 發行銀行이 直接 受益者에게 郵便으로 通知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通知를 받은 受益者나 取扱銀行이 來到한 信用狀의 眞正性(眞僞性) 與否에 대한 判別이 곤란하기 때문에 受益者 所在地의 發行銀行 本·支店이나 換去來銀行을 통하여 通知하는²⁾ 것이 一般的이다.³⁾

1) Johannes C.D. Zahn, *Zahlung Und Zahlungssicherung Im Aussenhandel*, Walter de Gruyter & Co., 1976, S.80; 伊澤孝平, 商業信用狀論, 有斐閣, 1958, p.520.

2) 發行銀行이 信用狀을 受益者에게 傳達해주는 세 가지 方法은 (1) 發行銀行이 發行依賴人의 要求에 따라 信用狀을 發行依賴人에게 交付하여 發行依賴人이 直接 受益者에게 傳達하는 方法, (2) 發行銀行이 換去來銀行을

換去來銀行이 단순한 通知銀行인 경우에, 換去來銀行은 受益者에게 信用狀을 通知하도록 指示받을 뿐이다. 通知銀行은 信用狀의 通知를 위한 發行銀行의 代理人에 불과하며, 通知銀行이 買入銀行으로 指定되었을 경우 發行銀行의 指示에 따라 買入한 書類가 비록 詐欺로 밝혀졌더라도 相當한 注意를 가지고 履行하는 한 결코 責任이 없다. 예컨대 Lamert v. Health 事件⁴⁾에서 發行銀行은 代理人인 通知銀行에게 特定の 假證券(Scrip)을 買入하도록 指示하였다. 이에 通知銀行이 假證券을 買入하였으나, 그 證券은 不法으로 發行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法院은 다음과 같이 判定하였다.

“代理人인 通知銀行이 信用狀 文面上으로 眞正한 證券을 買入하였으며, 注意를 소홀히 하였거나 委任을 越權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通知銀行은 發行銀行의 代理人으로서 授權받은 대로 正當하게 買入한 書類가 詐欺로 밝혀졌더라도 發行銀行은 補償해 줄 義務가 있다.

美國法에서는 通知銀行은 發行銀行의 代理人이라는 점을 前提로 하여 英美法上 “代理人은 本人을 위한 去來로부터 利益을 얻을 수 없는 것”이 原則인데 通知銀行이 자신의 利益을 위하여 受益者가 發行銀行 앞으로 發行한 어음을 買入하는 것은 이 原則에 違反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提起되었으나, 이와 같은 代理關係는 通知銀行이 信用狀의 發行을 受益者에게 通知함과 同時에 終了되는 것이므로 通知의 完了後에 通知銀行이 獨自의인 地位에서 어음을 買入하는 것은 이 原則의 違背가 아니라는 것이 通說⁵⁾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判例로 Oelbermann v. National City Bank of New York 事件⁶⁾에서 法院은 “通知銀行이 信用狀의 發行을 通知한 後에는

통하여 受益者에게 傳達하는 方法, (3) 發行銀行이 直接 受益者에게 傳達하는 方法 등이 있다.

3) 小峯 登, 1974年 信用狀統一規則(上), 外國爲替貿易研究會, 1979, p.219.

4) (1846) 153 E.R. 941; E.P. Ellinger, “Documentary Credits and Fraudulent Documents”, *Reported at Singapore Conferences on International Business Law*, 1983, p.206.

5) H.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 7th ed., Europa Publications Ltd., 1984, p.81.

通知銀行의 責任에 관한 한 代理契約은 終了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通知銀行이 어음을 買入하는 행위가 비록 通知銀行의 利益과 計算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契約의 違反이 아니다”라고 判示하였다.

또한 *Courteen Seed Co. v. Hong 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事件⁷⁾에서도 法院은 “通知銀行이 信用狀을 通知하고 나면 代理關係는 終了하고, 通知銀行은 發行銀行에 대하여 아무런 義務도 負擔하지 않는 獨自的인 地位에 있게 되므로 자신의 危險과 計算으로 어음을 買入할 수 있다”라고 判示하였다.

따라서 美國에서는 換去來銀行關係를 代理關係로 보고 있으며, 換去來銀行은 受益者에 대한 關係에서는 어떠한 固有의 債務도 지지 아니한다.⁸⁾ 그러나 發行銀行으로부터 支給·引受·買入의 依賴를 받아 이를 受諾하면 換去來銀行은 受益者가 提示한 書類를 支給·引受·買入하는데 換去來銀行은 受益者에게 信用狀金額을 支給하고 發行銀行에게 그 事實을 通報한다. 그러므로 이때 受益者가 書類를 提示하면 換去來銀行은 發行銀行의 依賴를 받고 受益者에 대하여 有效한 書類檢査를 하며, 受益者가 書類의 提示를 換去來銀行에 適期에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大陸法에서는 通知銀行이 어음의 支給·引受·買入을 承諾할 경우, 發行銀行과 支給銀行(通知銀行)間에도 都給契約의 性質을 가지는 事務處理契約(*Geschäftsbesorgungsvertrag*)이 存在한다.⁹⁾ 이 경우에 通知銀行은 受益者가 提示한 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느냐의 與否를 點檢하고 이를 引受·支給할 責任을 진다. 通知銀行이 이를 履行하면 發行銀行은 通知銀行에게 報酬를 支給하고 信用狀金額을 補償하거나 先貸해 주어야 한다.¹⁰⁾

6) (1935), 79 F. (2d) 534.

7) (1927), 245 N.Y. 377.

8) E.P. Ellinger,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A Comparative Study*, Univ. Singapore Press, 1970, p.219.

9) 獨逸民法 第631條 및 第675條; Johannes C.D. Zahn, *a.a.O.*, S.40.

10) 獨逸民法 第669條 및 第675條.

그리고 受益者와의 關係에서 通知銀行은 아무런 契約上의 責任을 지지 아니하며, 특히 通知銀行이 書類의 引受를 拒絕할 때에는 受益者는 發行銀行에 대하여만 이의를 提起하여야 한다. 그러나 期限의 確保에 관하여는 書類가 適期에 通知銀行에 提示되는 것으로 充分하고, 通知銀行은 發行銀行을 代理하여 受益者를 상대로 書類檢査를 履行하며, 이것이 바로 發行銀行을 구속한다.¹¹⁾ 通知銀行은 受益者에 대하여 發行銀行의 代理人으로서 行動을 한다.¹²⁾ 通知銀行이 그 代理權을 超越할 때에는 受益者에게 責任을 지고, 가능하면 거래상의 접촉을 근거로 損害賠償責任을 負擔한다.¹³⁾ 通知銀行은 受益者에 대하여 發行銀行의 履行補助者로서 行動을 하기 때문에, 만약 通知銀行이 發行銀行의 指示를 違反하는 때에는 受益者에게 積極的 債權侵害의 原理에 따라 損害賠償責任을 져야 한다.¹⁴⁾

2. 通知銀行이 信用狀發行通知를 依賴받았을 경우의 責任

信用狀의 發行은 賣買契約 履行의 先行條件¹⁵⁾이기 때문에 信用狀이 發行되었어도 迅速하고 正確하게 賣渡人에게 傳達되지 않는다면, 賣渡人은 信用狀의 發行事實이나 그 內容에 관하여 알지 못하므로 賣渡人은 適期에 賣買契約를 履行할 수 없게 된다. 發行依賴人의 指示에 따라 發行銀行은 第3銀行(특히 換去來銀行)에게 信用狀의 發行事實을 受益者에게 通知해 달라고 要求할 수가 있다.¹⁶⁾

그러므로 發行銀行이 第3銀行에 대하여 受益者에게 通知해 달라고 依賴하여 第3銀行이 通知를 하게 되면 發行銀行과 通知銀行間에는 信用狀 事務處理契約이 成立하게 된다.¹⁷⁾ 이때 通知를 依賴받은 銀行은

11) Johannes C.D. Zahn, *aa.O.*, S.120.

12) Johannes C.D. Zahn, *aa.O.*, SS.120-121.

13) 獨逸民法 第179條 2項.

14) 獨逸民法 第278條.

15) H.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op. cit.*, p.46; 이에 관한 事例로는 *Dix v. Grainger* (1922), 10 Ll. L. Rep. 496 ; *Garcia v. Page & Co.*, (1936) 55 Ll. L. Rep. 391, 392.

16) 伊澤孝平, 前掲書, p.375.

반드시 通知受諾의 義務를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通知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通知를 實行할 수 없다는 事實을 發行銀行에 즉시 通知하여야 한다.¹⁸⁾ 信用狀統一規則의 第4次 改正까지는, 通知銀行이 發行銀行으로부터 通知의 依賴를 받고 아무런 반응없이 그냥 있다가 信用狀去來에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規制條項이 없어 通知銀行과 發行銀行間的 法律關係가 문제시 될 수 있었으나, 第5次 改正規則 第7條 (a)項에서는 第4次 改正規則 第8條의 條項에다 “만약 通知銀行이 信用狀을 通知하지 아니 하기로 택한 경우에는 同銀行은 지체없이 發行銀行에게 이를 반드시 通告하여야 한다”¹⁹⁾ 라는 문언을 뒷부분에 追加하였다. 따라서 通知銀行은 信用狀通知의 與否에 대한 意思表現을 신속하게 通告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通知를 依賴받은 銀行이 發行通知를 受諾하게 되면 通知銀行이 이 事實을 迅速·正確하게 通知하지 않으면 損害賠償 등의 複雜한 問題가 發生하게 되므로, 通知銀行은 信用狀이 來到하면 迅速하게 電信을 이용하여 信用狀 來到事實을 通知한다. 電信이 不通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연락하고 등기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²⁰⁾

그런데 發行銀行이 通知銀行에 確認된 電信으로 信用狀發行 또는 信用狀條件變更 事實을 通知하도록 指示한 때, 이 電信文은 有效한 信用狀證書 또는 有效한 條件變更證書로 간주되며 별도의 郵便確認書を 送付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郵便確認書を 送付한 경우 그것은 效力이 없으며, 通知銀行은 그러한 郵便確認書を 電信으로 접수한 信用狀證書 또는 條件變更書와 대조할 義務가 없다.²¹⁾

또한 電信文이 “full details to follow(細部事項은 追後 通知함)”(또

17) Johannes C.D. Zahn, *aaO.*, S.40.

18) U.C.P. 500, Art. 7(a).

19) If the bank elects not to advise the Credit, it must so inform the Issuing Bank without delay.

20) ICC 韓國國內委員會, 第5次 改正 貨換信用狀 統一規則 및 慣例, 大韓商工會議所, 1983, p.25.

21) U.C.P. 500, Art. 11(a) (i).

는 이와 유사한 效力을 가지는 文言)이라고 明示하고 있거나 또는 追後 도착하는 郵便確認書가 有效한 信用狀證書 또는 有效한 條件變更書가 된다고 明示하고 있는 경우 이 電信文을 有效한 信用狀證書 또는 有效한 條件變更書로 간주하지 않는다. 發行銀行은 有效한 信用狀證書 또는 有效한 條件變更書를 通知銀行에 지체없이 送付하여야 한다.²²⁾

따라서 發行銀行이 確認된 電信으로 信用狀을 發行한 경우에는, 그 電信은 有效한 信用狀證書로 認定한다. 특히 이번 第5次 改正에서는, 電信에 이어 郵便確認書가 送付된 때에는 그 郵便確認書는 아무런 效力이 없으며, 또한 通知銀行은 이러한 郵便確認書를 대조하여야 할 義務가 없다는 文言을 追加하였다. 이러한 文言의 追加는 만약 郵便確認書의 內容이 電信과 다를 때 발생하는 問題點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電信에서 郵便確認書를 有效한 信用狀證書로 한다고 明示한 경우에는, 電信은 有效한 信用狀證書가 될 수 없으므로 發行銀行은 지체없이 有效한 信用狀證書를 通知銀行에게 送付해 주어야 한다.

通知銀行과 受益者間에는 通知에 관하여 아무런 契約關係가 없으나 發行銀行과 通知銀行間에는 換去來契約에 의하여 委任關係가 成立되어 있으므로²³⁾ 通知銀行은 通知를 受諾하면 委任받은대로 信用狀을 迅速하게 受益者에게 傳達할 責任이 있다.²⁴⁾ 이에 反하는 判例²⁵⁾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學者나 專門家は 이 判例에 강력한 反對意思를 表明하였다. 그러나 通知銀行은 信用狀 來到事實을 書信으로 送付하거나 電信으로 送信하는 중에 發生하는 어떠한 責任도 負擔하지 않는다.²⁶⁾

여기에는 發行銀行이 第3銀行에게 發行通知를 要求할 수가 있지만

22) U.C.P. 500, Art. 11(a) (ii).

23) Johannes C.D. Zahn, *aaO.*, S.122.

24) Sound of Market Street Inc. v. Continental Bank International, (1985) 623 F. Supp. 93.

25) Sound of Market Street Inc. v. Continental Bank International, (1987), 819 F. 2d 384, 388, 391-393.

26) U.C.P. 400, Art. 8; U.C.P. 500, Art. 7 (a).

第3銀行은 이 通知를 받드시 受諾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發行銀行이 指示한 通知를 第3銀行이 受諾하느냐 受諾하지 않느냐는 간단·명료한 問題이므로 별 問題는 없다. 問題는 第3銀行이 通知事實을 受諾하였을 경우의 關係인데 英美法과 大陸法側面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英美法에서는 發行銀行이 換去來銀行한테 受益者에게 信用狀의 發行을 通知하도록 依賴하면,²⁷⁾ 發行의 效力은 “受益者에 대하여는 信用狀 혹은 信用狀의 發行에 관한 權限있는 書面通知書を 受益者가 受領하는 때에 效力이 發生한다.”²⁸⁾ 通知銀行의 地位는 發行銀行에 대한 關係에서 代理關係로 보는 것이 通說로 되어 있고,²⁹⁾ 이 때에 通知銀行은 代理人의 權利와 義務를 가지며, 發行銀行에 대하여 發行銀行의 發行通知 指示에 따라 通知銀行이 受益者에게 通知하게 되면 受益者에 대하여 本人(principal)의 權利가 認定된다.³⁰⁾ 通知銀行은 發行依賴人³¹⁾ 및 受益者와는 어떠한 契約關係도 가지지 않으므로 그에 대하여 어떠한 權利와 義務도 가지지 아니한다.

發行銀行의 發行通知 指示에 따라 通知銀行이 단순히 通知만을 履行하면 受益者에 대하여 아무런 債務를 負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通知銀行은 “다만 通知銀行은 그 文言記載上의 正確性에 대하여는 責任을 진다.”³²⁾ 즉, 通知銀行은 發行銀行으로부터 指示받은 대로 信用狀을 通知하여야 한다. 만일 이 단서의 規定을 어긴다면 發行銀行은 通知銀行에 대하여 損害賠償請求權을 가지게 된다.³³⁾

27) Henry Harfield, *Bank Credits and Acceptances*, The Ronald Press Company, 1974, pp.327-328.

28) U.C.C. Sec. 5-106 (1) (b).

29) Samuel Kronman & Co., Inc. v. Public National Bank of New York, (1926) 218 N.Y.S. 621-622.

30) U.C.C. Sec. 5-111 (2).

31) 通知銀行과 發行依賴人이 어떠한 契約關係도 가지지 않는다는 判例로는 Johnson v. Robert, (1875) L.R. 10 Ch. 505;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awson partners Ltd., (1926) 25 Ll. L. Rep. 90; Calio Printers' Association v. Barclays Bank Ltd., (1931) 36 Com. Cas 71.

32) U.C.C. Sec. 5-107 (1).

33) E.P. Ellinger, *op. cit. supra note 8*, p.232.

大陸法에서는 通知銀行은 發行依賴人 및 受益者와는 아무런 契約關係가 存在하지 아니하므로,³⁴⁾ 이들 當事者 사이에는 어떠한 契約上の 請求權도 없다는 것이다. 發行依賴人이 換去來銀行의 義務違反時에 發行銀行에 대하여 가지는 權利에 관하여는 確認銀行의 경우와 거의 一致한다.³⁵⁾ 또 通知銀行이 發行依賴人 및 受益者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契約關係가 成立하지 않기 때문에 契約上の 請求權을 고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通說이다. 通知銀行은 원칙적으로 提示하여야 할 書類와도 關係가 없으며, 특히 受益者가 期限來到 前에 직접 通知銀行에 書類를 提出하는 行爲와 通知銀行이 好意로 實行한 書類의 檢査도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이다.³⁶⁾

3. 通知銀行의 眞正性 確認에 대한 責任

通知銀行이 信用狀을 通知하기로 택한 경우에는 通知銀行은 信用狀의 外觀上の 眞正性(apparent authenticity)을 確認하기 위해 相當한 注意를 다하여야 한다.³⁷⁾ 만약 通知銀行이 그러한 外觀上の 眞正性(眞僞性)을 確信할 수 없을 경우에는, 通知銀行은 지체없이 그 指示를 送付해 온 銀行에게 그 信用狀의 眞正性을 確信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通告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通知銀行이 信用狀을 通知하기로 택한 경우에는 通知銀行은 受益者에게 그 信用狀의 眞正性을 確信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通告하여야 한다.³⁸⁾

만약 通知銀行이 發行銀行과 換去來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信用狀의 眞正性을 確認할 수 없는 경우,

34) Johannes C.D. Zahn, *aa.O.*, S.119; Zahn은 發行銀行의 通知依賴는 獨逸民法 第151條에 의하여 明示의인 承諾이 필요없는 契約의 請約을 의미하고, 이에 대하여 信用狀發行에 대한 通知는 나중에 承諾의 意思表示를 포함한다고 한다.

35) Diane Furman Dann, "Confirming Bank Liability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Whose Bank is it anyway?", *Fordham Law Review*, Vol. 51, 1983, p.231.

36) Johannes C.D. Zahn, *aa.O.*, S.119.

37) U.C.P. 400, Art. 8; U.C.P. 500, Art. 7 (a).

38) U.C.P. 500, Art. 7 (b):

그러한 사실을 發行銀行에 지체없이(without delay) 通知하여야 한다. 通知銀行이 지체없이 그 사실을 發行銀行에 通知하도록 규정하면서 具體的인 期間을 明示하지 않은 것은 通知할 당시의 상황에 따라 期間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通知銀行이 그러한 사실을 發行銀行에 지체없이 알림으로써 發行銀行이 부주의로 인하여 信用狀을 잘못 發行한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換去來가 없는 銀行이 發行한 信用狀을 通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免責文言을 附加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眞正性を 밝힐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免責文言을 附加하지 않고 通知番號를 부여하면 眞正성이 있는 것으로 解釋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免責文言의 例로 “We assume no responsibility regarding advising this credit, since we have no correspondent relationship with issuing bank and therefore cannot verify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is credit”라고 하면 된다. 그러므로 通知銀行이 受益者에게 信用狀通知時 署名確認印을 捺印하고, 通知番號를 記載한 경우 그 信用狀은 眞正성이 있는 것으로 解釋하여야 한다.

通知銀行은 發行銀行으로부터 받은 信用狀의 指示事項이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없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確認하고서 通知할 것을 前提로 하고 있는데, 信用狀의 署名에 대한 眞正性 與否에 대하여 確認할 義務까지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ICC 銀行技術實務委員會는 “確認을 追加하지 않은 경우에도 通知銀行이 送達된 信用狀에 대하여 發行銀行의 署名에 대한 眞正性を 確認하여야 할 것으로 간주되며 信用狀의 眞正性 與否를 判別할 義務가 있다”라고 有權解釋을 내린 바 있다.³⁹⁾

第5次 改正規則 第7條 (b)項은, 通知銀行이 信用狀의 外觀上의 眞正性を 確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信用狀을 受益者에게 通知하고자

39) ICC, Document (470/328, 470/330), Meeting on April 1978.

할 때 通知銀行의 責任問題를 定하기 위하여 이번 改正規則에 새로 追加된 義務條項이다. 따라서 이번 改正規則에서는 通知銀行의 信用狀에 대한 眞正性의 確認에 대한 責任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4. 通知銀行이 어음을 支給·引受·買入할 責任

發行銀行은 通知銀行에게 信用狀에 의한 어음을 支給·引受·買入해 주도록 要求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通知銀行은 換去來契約에 의해 發行銀行의 委任을 받아 또는 그 代理人으로 受益者에게 信用狀發行을 通知하고 있으므로 同銀行은 信用狀의 通知만 履行할 뿐이다. 따라서 發行銀行은 通知의 事務處理만을 행하는 通知銀行에게 信用狀상의 債務를 要求할 權利는 原則적으로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通知銀行은 당연히 그 信用狀에 의한 어음의 支給·引受·買入에 응해야 할 責任은 없다.

그러므로 通知銀行이 指定銀行으로 授權된 경우에는 信用狀을 通知할 때 受益者에 대하여 支給·引受·買入한다고 별도의 明示的인 合意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合意가 없는 한 通知銀行은 결코 信用狀을 通知하고 書類를 受領, 審査 또는 發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支給·引受·買入의 責任을 負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發行銀行의 支給·引受·買入의 要求를 受諾하면 通知銀行은 信用狀의 通知뿐만 아니라 信用狀에 의하여 發行된 어음의 支給·引受·買入銀行의 資格으로, 또는 發行된 信用狀에 의한 支給·引受·買入의 確約을 追加함으로써 發行銀行과 同一한 確約을 提供하는 確認銀行의 資格으로 介入한다고 할 수 있다.⁴⁰⁾ 이 경우에 通知銀行은 受益者에게 信用狀의 發行을 通知할 責任이 있으므로 發行銀行은 당연히 通知銀行에게 通知手數料를 支給할 義務가 있다.⁴¹⁾ 또한 發行銀行의 어음의 支給·引受·買入要請에 따라 通知銀行이 支給銀行의 機能을 遂行하는데, 이 때에는 通知銀行은 支給銀行의 地位에서 提示된

40) 東京銀行 編, 貿易と信用狀, 實業之日本社, 1990, p.76.

41) Johannes C.D. Zahn, *aaO.*, S.114.

書類와 相換으로 支給하면 發行銀行은 그 支給에 대하여 補償할 義務가 있다.⁴²⁾

그러므로 通知銀行이 發行銀行의 支給·引受·買入에 대한 要求를 接受하였을 경우에 信用狀의 取消에 관한 通知를 發行銀行으로부터 接受하지 않는 한, 取消可能信用狀이라고 할 지라도 發行銀行은 通知銀行의 支給·引受·買入에 대하여 償還할 義務가 있는 것이다.⁴³⁾

英美法에서는, 英國의 경우 通知銀行의 買入行爲에 대한 獨自性を 認定한다. 즉, 買入信用狀에서는 發行銀行과 通知銀行間에 成立되는 委任 및 代理關係는 受益者에게 信用狀의 發行事實을 通知함으로써 義務가 終了되며,⁴⁴⁾ 受益者가 發行한 어음을 買入한 경우에는 發行銀行에 대하여 어떠한 義務를 負擔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見解가 認定된다. 따라서 英國에서 通知銀行은 어음買入行爲에 대하여 選擇의 自由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경우 發行銀行이 通知銀行에게 受益者가 發行한 換어음을 支給·引受·買入하도록 授權한 경우에는 통상 發行銀行의 代理 또는 委任의 關係로서 買入을 행하든가 또는 通知銀行의 獨自的 危險과 計算으로 買入을 행하든지,⁴⁵⁾ 兩者中 어느 하나를 選擇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英美法上에서는 通知銀行은 스스로 이러한 行爲를 마음대로 選擇할 수 있는 獨自性を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⁴⁶⁾

大陸法에서는 發行銀行과 支給銀行(通知銀行)間에는 都給契約의 性質을 가지는 事務處理契約이 存在한다.⁴⁷⁾ 이 경우에 通知銀行은 受益者가 提示한 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하는지 點檢하고, 경우에 따라

42) 伊澤孝平, 前掲書, pp.522-523.

43) U.C.P. 400, Art. 9 (b); U.C.P. 500, Art. 8 (b).

44) A.G. Davis, *The Law Relating to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3rd ed., Sir Issac Pitman & Sons Ltd., 1963, p.98.

45) 이에 관한 判例로는 Oelbermann v. National City Bank of New York, (1935) 79 F. (2d) 534; Courteen Seed Co. v. Hong 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1927) 245 N.Y. 377.(H.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op. cit.*, p.81).

46) H.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op. cit.*, p.68.

47) 獨逸民法 第631條, 第675條; Johannes C.D. Zahn, *a.a.O.*, S.40.

서는 그 信用狀을 引受·支給할 責任을 진다.⁴⁸⁾ 따라서 發行銀行은 이에 대하여 通知銀行에게 報酬를 支給하고 信用狀金額을 補償하거나 先貸해 주어야 한다.⁴⁹⁾

信用狀을 通知한 이상 通知銀行은 受益者가 發行한 換어음의 買入을 受諾한 것이며 최소한 發行銀行의 代理人으로서의 義務履行이 要求되고 있다. 따라서 買入에 대한 意思가 없을 경우에는 通知하기 前에 發行銀行의 提議를 拒絶하여야 한다.⁵⁰⁾ 따라서 通知銀行은 同銀行에서 換어음을 支給·引受·買入한다는 것을 通知하게 되면 受益者는 通知銀行에 대하여 適한 書類를 具備하여 提示하므로써 代金支給을 받을 權利가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大陸法에서는 通知銀行이 通知와 買入에 관한 指示를 同時에 受諾한 것으로 간주하여⁵¹⁾ 受益者에 대한 支給債務가 存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⁵²⁾

英美法과 大陸法을 比較하면, 英美法에서는 買入이 指定되지 않은 通知銀行의 買入行爲에 대한 獨自性を 認定하고 있으며, 大陸法에서는 通知銀行이 당연히 換어음을 買入해야 할 責任이 있다는 것이다.⁵³⁾

III. 通知銀行의 責任의 限界와 免責

1. 書類의 送達中 紛失할 때 損害賠償問題의 경우

指定銀行, 確認銀行, 通知銀行 등이 書類를 發送할 때에 그 수배에 過失이 없는 한, 傳達, 發送中の 遲延·紛失·滅失이 發生하더라도 이

48) Johannes C.D. Zahn, *aa.O.*, S.118.

49) 獨逸民法 第669條 및 第675條.

50) 小峯 登, 前掲書, pp.226-227.

51) 여기에서 大陸法은 信用狀統一規則 第4次 改正規則 第8條에서 通知銀行과 受益者 間に 어떠한 約束이나 義務도 存在하지 않는다는 規定과 相衝된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52) 小峯 登, 前掲書, p.226.

53) 伊澤孝平, 前掲書, p.525.

러한 銀行은 發行銀行에 대하여 免責이 되며,⁵⁴⁾ 發行銀行으로부터 支給·引受 또는 補償을 받을 수 있다.⁵⁵⁾ 이러한 銀行으로부터 代金を 償還한 發行銀行은 그 危險負擔을 다시 發行依頼人에게 轉嫁시키게 된다. 다만 이러한 銀行은 發行銀行의 代理人 또는 受任者로서 發行銀行으로부터 支給·引受·買入·確認·通知 등을 授權받고 있는 경우에 限定하고 있다.⁵⁶⁾

이러한 書類가 郵便局이나 通信擔當機關 등의 送達機關으로 引渡된後 어떤 理由에 의해 紛失·滅失하여 配達不能이 되거나, 또는 配達이 豫定期間을 상당히 超過하게 되어도 이러한 모든 銀行은 이와 같은 事故에 대해서 일체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⁵⁷⁾ 그리고 發行銀行은 發行依頼人의 指示에 의거하여 Cable Credit를 發行하여 電信으로 通知하는 경우가 있으며 信用狀의 條件變更 또는 受益者側으로부터의 條件變更의 申請에 대한 回答을 電信으로 通告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 發行銀行이 지체없이 電信의 送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電信局의 잘못이나, 罷業, 直通으로 電信을 보낼 길이 없어 지체되어 發行依頼人에게 중대한 損害를 끼쳤다 하더라도 發行銀行은 免責된다.⁵⁸⁾

그러나 書類의 紛失·滅失이 受益者의 代理人인 仲介銀行 또는 任意的 買入銀行이 介入하여 同銀行이 指定銀行 또는 發行銀行으로 發送하는 도중에 發生하는 경우는 論議의 對象에서 除外되어 이에 대한 責任은 仲介銀行, 任意的 買入銀行이 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⁵⁹⁾ 信用狀統一規則⁶⁰⁾에서는 “授權된 銀行이 信用狀條件과 文面上 一致하

54) U.C.P. 400, Art. 18; U.C.P. 500, Art. 16.

55) H.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op. cit.*, p.195.

56) 小峯 登, 前掲書, p.458.

57) 朝岡良平, 逐條解說 信用狀統一規則,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85, p.188; 舟木 凌, “書類の送達中紛失について”, 『國際金融』 第575號, 1976, p.20. 그런데 書類의 發送中の 紛失, 滅失이란 書類가 郵便局에 到着하기 以前에 銀行內에서 紛失, 滅失하는 경우에는 銀行은 免責되지 않으며, 銀行이 書類를 郵便局에 傳達한 후 郵便局의 紛失, 滅失 또는 他銀行의 不可抗力의 事由로 인하여 發生하는 紛失, 滅失인 경우에만 免責된다.

58) U.C.P. 400, Art. 18; U.C.P. 500, Art. 16.

59) 小峯 登, 前掲書, p.500; 舟木 凌, 前掲書, p.21.

고 있는 書類와 償還하여 買入하는 경우는 權限을 賦與한 當事者는 買入한 銀行에 대하여 償還할 義務를 진다”라는 規定을 볼 때 仲介銀行이나 任意의 買入銀行의 경우라 할 지라도 發送한 書類의 紛失·滅失·不着 등에 수반하는 危險은 發送한 事實을 立證하는 한 모두 發行銀行이 지는 것이며,⁶¹⁾ 더 나아가서는 發行依賴人이 責任을 져야 한다고 言及하고 있다.

그러므로 指定銀行, 確認銀行, 通知銀行 등이 發行銀行에 發送하는 도중에 發生한 紛失의 경우 書類發送에서 이러한 銀行이 過失이 없는 한 發送中の 遲延·紛失·滅失이 發生하더라도 이를 立證하는 한 發行銀行에 대하여 免責이 되고,⁶²⁾ 發行銀行으로부터 償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解釋된다.⁶³⁾

美國統一商法典에서는 信用狀의 發行時期의 경우 發行銀行은 發行依賴人에 대한 關係에서는 發信主義를, 受益者에 대한 關係에서는 到達主義, 受信主義를 취하는 등 二元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信用狀은, 發行依賴人에 대한 關係에서는 信用狀이 受益者에게 發送되거나 信用狀이나 信用狀發行을 알리는 權限있는 書面通知가 受益者에게 發送된 때에 發行銀行은 免責된다⁶⁴⁾(發信主義). 또한 受益者에 대한 關係에서는 受益者에게 信用狀이나 信用狀發行을 알리는 權限있는 書面通知가 到達된 때에 發行된 것으로 보므로,⁶⁵⁾(受信主義) 發行銀行은 受益者에게 通知를 發送한 것만으로 發行依賴人에게는 免責되며, 만약 受益者에게 이러한 通知가 到達되지 않아도 發行銀行은 通知事實을 立證하는 한 受益者에게는 免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受益者와 發行依賴人의 法律關係로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通知銀行도 發行銀行에 대해서는 發信

60) U.C.P. 400, Art. 16 (a); U.C.P. 500, Art. 14 (a).

61) H.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op. cit.*, p.195.

62) U.C.P. 400, Art. 18; U.C.P. 500, Art. 16.

63) 舟木 凌, 前掲書, p.22.

64) U.C.C. Sec. 5-106 (1) (a).

65) U.C.C. Sec. 5-106 (1) (b).

主義를, 受益者에 대해서는 到達主義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通知銀行은 發行銀行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信用狀을 發行한 후 이를 郵遞局 등을 통하여 發送하면 義務를 다하는 것이 되며⁶⁶⁾ 發送中の 事故 등으로 인한 不到着의 事態 등에 대해서는 發送事實을 立證하는 한 일체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書類의 紛失·滅失의 危險은 發行銀行과 通知銀行間에 委任 내지 代理人으로서 授權關係에 있을 때에는 通知銀行으로서의 自身の 過失에 의해 發生한 事故가 아니므로 發行銀行에게 轉嫁되고,⁶⁷⁾ 최종적으로는 發行依頼人에게 轉嫁된다고 할 수 있다.

2. 書類翻譯의 錯誤時 損害賠償問題의 경우

銀行은 買賣契約上 사용되는 專門用語에 관하여는 원래 充分한 知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正確히 翻譯하고 解釋하는 것은 곤란하다.⁶⁸⁾

信用狀統一規則은 “銀行은 專門用語의 翻譯 또는 解釋上の 瑕疵에 대하여 어떠한 責任이나 義務를 負擔하지 아니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⁶⁹⁾ 美國統一商法典에도 “別途의 定함이 없는 한 顧客(發行依頼人)은 發行人(發行銀行)에 대해서 信用狀에 관한 通報의 送信 및 相當한 翻譯, 解釋上の 모든 危險을 負擔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⁷⁰⁾

일반적으로 信用狀去來에서 英語圈의 國家에서 英文으로 信用狀이

66) 우리 나라에서는 民事訴訟法 第163條, 第174條에 의하여 郵便送達은 郵便集配人으로서 하게 되어 있으며 發信主義(특정한 相對方에 대한 意思表示는 發信할 때에 그 效力이 發生한다는 主義)를 採擇하고 있다.

67) E.P. Ellinger, *op. cit. supra note 8*, p.233. 그러나 通知銀行이 免責받기 위해서는 紛失書類가 信用狀條件에 一致한 것이고, 또한 正식으로 書類가 發送되었다는 事實을 發行銀行에 立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紛失된 書類의 寫本이 準備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寫本으로 立證할 수 있지만, 만약 寫本이 準備되지 않은 경우 發行銀行으로부터 代金償還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

68) 小峯 登, 前掲書, p.510.

69) U.C.P. 400, Art. 18; U.C.P. 500, Art. 16.

70) U.C.C. Sec. 5-107 (4).

發行되기를 바라고 있듯이 여러 國家들이 아랍語, 佛語, 西班牙語 등 自己들의 言語를 使用하기를 원한다. 이 경우 受益者가 翻譯을 要求할 때는 發行依賴人이 發行銀行에 부탁하는 것이 指示事項을 알 수 있는 方法이기는 하다.⁷¹⁾ 그러나 多樣한 言語 등으로 信用狀이 發行되어 오더라도 通知銀行은 翻譯하지 않고 受益者에게 傳達할 權利가 있으며, 發行依賴人의 要請에 못이겨 翻譯·解釋을 하여 그것이 잘못되어도 通知銀行은 이에 대한 責任을 지지 않는다.⁷²⁾

그리고 信用狀의 原本, 條件變更通知書, 不渡通知書 등이 受益者나 銀行間에 傳達되어 이들의 通知와 書類 등에 사용되고 있는 言語가 自國語가 아닌 경우라 할 지라도 通知銀行은 이를 翻譯할 責任은 없고, 原文 그대로 傳達할 수 있는 權利가 있으며 이러한 모든 過失에 대해서도 免責된다.⁷³⁾ 따라서 翻譯·解釋하느냐의 與否는 通知銀行의 意向에 달려있기 때문에 信用狀條件을 翻譯·解釋하지 않고 通知할 權利를 가진다.⁷⁴⁾ 이러한 翻譯·解釋은 賣買當事者間의 問題이므로, 만약 發行依賴人이 翻譯·解釋을 강요하여 錯誤時에는 發行銀行과 通知銀行은 이에 대한 責任을 지지 않는다.⁷⁵⁾

3. 發行銀行의 指示대로 정확히 通知하지 않은 경우

通知銀行이 發行銀行의 依賴로 信用狀發行的 通知를 受諾하면, 發行銀行과 通知銀行間에는 委任 또는 代理關係가 存在하므로 信用狀의 指示關係에서 兩者間에는 직접적으로 法律關係가 成立하게 된다.⁷⁶⁾ 通

71) F.M. Ventris, *Bankers' Documentary Credits*, 2nd ed.,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3, p.22.

72) 伊澤孝平, 前掲書, pp.754-755; 小峯 登, 前掲書, p.506.

73) E.P. Ellinger, *op. cit. supra note 8*, p.169.

74) U.C.P. 400, Art. 18; U.C.P. 500, Art. 16.

75) 韓國, 日本에서도 母國語로 된 發行依賴書에 의거하여 英文의 信用狀을 發行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各銀行마다 信用狀發行依賴書는 英文書式으로 되어 있어서 受益者의 英文條件을 通知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고 있다(小峯 登, 前掲書, p.507).

76) E.P. Ellinger, *op. cit. supra note 8*, p.232; 小峯 登, 前掲書, p.221. 이에 대한 判例로는 Samuel Kronman & Co., Inc. v. Public National Bank

知銀行은 發行銀行으로부터 指示받은 內容을 受益者에게 迅速·正確히 傳達하여야 할 責任을 가지고 있다.⁷⁷⁾

發行銀行의 委任에 의하여 通知銀行은 信用狀의 發行을 受益者에게 단순히 迅速·正確하게 通知하는 것만이 義務이므로 그 이외의 것은 發行銀行에 대하여 어떠한 責任도 負擔하는 것은 없다.⁷⁸⁾ 그러나 通知銀行의 不法行爲上의 責任은 이와는 別個로 存在할 수 있으므로 通知銀行의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適期에 通知하지 않는 경우와 不正確한 通知를 함으로써 受益者에게 損害를 생기게 할 때에 通知銀行은 不法行爲上의 損害賠償責任을 負擔한다.⁷⁹⁾

ICC 銀行技術·實務委員會는 通知銀行의 過失에 대하여 發行銀行은 法的 責任이 免責된다고 다음과 같은 要旨의 有權解釋을 내림으로써 通知銀行의 責任을 強調하고 있다. “本委員會는 第12條(현행 규칙 제 20조)에 의거하여 發行銀行 또는 發行依賴人이 通知銀行을 選擇하였던 間に 通知銀行의 錯誤에 대하여 發行銀行이 어떠한 責任을 負擔하는 것이 아니라는 原則이 수립되어 있지만 發行銀行이 태만히 한 경우에는 이러한 免責이 適用되지 아니한다”라고⁸⁰⁾ 설명하였다.

信用狀統一規則에서는 通知銀行의 錯誤·過失로 인하여 通知上의 誤謬가 發生한 경우 發行銀行의 免責을 認定하고 있다고⁸¹⁾ 解釋할 수 있다. 따라서 信用狀이 通知銀行에 의해서 비록 잘못 通知되었다고 하더라도 受益者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通知된 信用狀은 그대로 有效하게 되며 通知銀行이 이에 대한 責任을 지게 된다. 또한 이 경우에 發行銀行은 發行依賴人에게 指示違反을 理由로 어떠한 責任도 負擔하

of New York, (1926) 218 N.Y.S. 621-622.

77) 小峯 登, 前掲書, p.222; U.C.P. 400, Art. 8 ; U.C.P. 500, Art. 7.

78) 上掲書, p.220.

79) 伊澤孝平, 前掲書, p.526; 韓國民法 第681條, 日本民法 第644條에서도 受任者의 義務를 規定하고 있는데, 通知銀行은 發行銀行에 의해 信用狀의 通知를 委任받은 이상 受任者로서의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를 다하여야 한다고 解釋할 수 있다.

80) ICC, *Opinions (1980~1981)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I.C.C. Publishing S.A., 1982, p.30.

81) U.C.P. 400, Art. 18; U.C.P. 500, Art. 16.

지 않는다.

美國統一商法典에서는 “다만 通知銀行은 그 文言記載上의 正確性에 대하여는 責任을 진다”라고 規定하고 있다.⁸²⁾ 따라서 通知銀行은 發行銀行으로부터 指示받은 대로 信用狀을 通知하여야 한다.⁸³⁾ 만일 이 단서의 規定을 어긴다면 通知銀行은 發行銀行에 대하여 損害賠償에 대한 責任을 負擔하게 된다.⁸⁴⁾

4. 通知銀行에게 어음의 支給·引受·買入을 依賴한 경우

發行銀行은 通知銀行에게 信用狀에 의한 어음을 支給·引受·買入해 주도록 依賴할 수 있다. 그러나 通知銀行은 당연히 그 信用狀에 의한 어음의 支給·引受·買入을 應해야 하는 責任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兩者間에 成立되는 法律關係의 性質은 當事者間의 法律行爲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지만, 通知銀行이 換어음의 支給·引受·買入을 受諾한 경우나 發行銀行과 동등한 立場에서 代金支給을 確約하는 確認銀行의 役割을 담당할 경우에는 委任關係와 指示의 關係가 竝存하고 있는 것으로 解釋된다.⁸⁵⁾

發行銀行의 委任과 指示에 의하여 通知銀行은 信用狀의 發行을 受益者에게 단순히 迅速·正確하게 通知하는 責任만을 부담하므로 그 이외의 것은 發行銀行에 대하여 어떠한 責任도 負擔하는 것은 없다.⁸⁶⁾ 따라서 通知銀行은 發行銀行의 換어음의 支給·引受·買入의 要求를 拒絶할 權利가 있으며, 이를 拒絶하면 別個의 契約은 成立하지 않는다. 그러나 發行銀行의 이러한 要求를 受諾하면, 信用狀의 取消에 관한 通知를 發行銀行으로부터 接受하지 않는 한 取消可能信用狀이라 할 지라도 通知銀行은 자신의 支給·引受·買入에 대하여 發行銀行에

82) U.C.C. Sec. 5-107 (1).

83) 이에 대한 判例로는 Marray Oil Products Co. v. Poons Co., (1947) 74. N.Y. S. 2d 814.

84) E.P. Ellinger, *op. cit. supra note 8*, p.232.

85) 小峯 登, 前掲書, p.221.

86) 小峯 登, 前掲書, p.220.

게 償還을 請求할 權利가 있는 것이다.⁸⁷⁾

英美法系에서는 通知銀行은 買入行爲에 대해서 獨自性을 가진다고 認定하고 있다.⁸⁸⁾ 즉, 通知銀行은 受益者에게 信用狀發行을 通知함으로써 責任을 완수하며,⁸⁹⁾ 發行銀行이 支給·引受·買入을 授權한 경우에는 통상 發行銀行의 代理 또는 委任의 關係로서 買入을 행하든가 또는 通知銀行의 獨自的 危險과 計算으로 買入을 행하든가⁹⁰⁾ 兩者中 어느 하나를 選擇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英美法系에서는 通知銀行은 스스로 이러한 行爲를 자유롭게 選擇할 수 있는 獨自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⁹¹⁾

大陸法系에서는 信用狀을 通知한 이상 通知銀行은 受益者가 發行한 換어음의 買入을 受諾한 것이며 최소한 發行銀行의 代理人으로서의 義務履行이 要求되고 있다. 따라서 買入에 대한 意思가 없을 경우에는 通知하기 전에 發行銀行의 提議를 拒絕하여야 한다.⁹²⁾ 따라서 通知銀行은 同銀行에서 換어음을 支給·引受·買入한다는 것을 通知하게 되면 受益者는 通知銀行에 대하여 適合한 書類를 具備하여 提示함으로써 代金支給을 받을 權利가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大陸法系에서는 通知銀行에 通知와 買入에 관한 指示를 동시에 受諾한 것으로 간주하여⁹³⁾ 受益者에 대한 支給債務가 存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⁹⁴⁾

결론적으로 英美法과 大陸法을 比較하면, 英美法系에서는 買入이 指定되지 않은 通知銀行의 買入行爲에 대한 獨自性을 認定하고 있으며,

87) U.C.P. 400, Art. 9 (b); U.C.P. 500, Art. 8 (b).

88) 小峯 登, 前掲書, p.225.

89) A.G. Davis, *op. cit.* p.98.

90) 이에 관한 判例로는 Courteen Seed Co. v.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1927) 245 N.Y. 377 (H.C. Gutteridge and Maurice Mehrah, *op. cit.*, p.81); Oelbermann v. National City Bank of New York, (1935) 79 F. (2d) 534.

91) H.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op. cit.*, p.68; 小峯 登, 前掲書, p.227-228.

92) 小峯 登, 前掲書, pp.226-227.

93) 이와 같이 信用狀統一規則 第8條와 大陸法系는 通知銀行의 義務가 相異함을 알 수 있다.

94) 小峯 登, 前掲書, p.226.

大陸法系에서는 通知銀行이 信用狀을 通知한 이상 당연히 換어음을 買入해야 할 責任이 있다는 것이다.⁹⁵⁾

IV. 結 論

通知銀行은 發行銀行의 依賴와 指示에 따라 受益者에게 信用狀의 發行을 通知하게 된다. 通知銀行은 通知를 受諾하면 委任받은 대로 信用狀을 신속하게 受益者에게 傳達하면 된다. 따라서 信用狀의 通知銀行은 受益者에 대한 支給의 確約을 추가함이 없이 信用狀을 通知한다. 그러나 이 通知銀行의 通知自體를 英美法과 大陸法이 약간 다르게 解釋하고 있다.

英美法系 國家는 通知銀行이 信用狀을 通知하므로써 通知銀行과 發行銀行間의 委任 및 代理關係는 終了되며, 어음買入行爲에 대해서는 따로 通知銀行이 獨自적으로 選擇할 수 있다. 그러나 大陸法系 國家는 通知銀行이 信用狀發行을 通知하기로 受諾하면, 受益者가 發行한 換어음을 買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第5次 改正 信用狀統一規則에서 通知銀行에 관하여 改正된 主要事項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通知銀行은 發行銀行으로부터 通知의 依賴를 받은 경우에 通知銀行은 信用狀通知의 與否에 대한 意思表現을 지체없이 發行銀行에게 通告하여야 한다는 것을 追加하였다. 따라서 通知銀行은 信用狀通知의 與否를 發行銀行에게 신속히 通告하지 못하므로써 발생된 被害는 通知銀行이 이에 대한 責任을 진다.

둘째, 通知銀行은 信用狀의 外觀上의 眞正性を 確認하기 위하여 相當한 注意를 다 하여야 하고, 그러한 外觀上의 眞正性を 確認할 수 없는 경우에는 通知銀行은 지체없이 그 指示를 送付해 온 銀行에게 그

95) 伊澤孝平, 前掲書, p.525.

信用狀의 眞正性を 確信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通告하여야 한다. 通知銀行이 이러한 事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通知銀行이 信用狀을 通知하기로 택한 경우에는 通知銀行은 受益者에게 그 信用狀의 眞正性を 確信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通告하여야 한다. 이 條項은 새로 追加된 通知銀行의 義務條項이다.

셋째, 發行銀行이 通知銀行에 確認된 電信으로 信用狀發行 또는 信用狀條件變更 事實을 通知하도록 指示한 때, 이 電信文은 有效한 信用狀證書 또는 有效한 條件變更證書로 간주되며 별도의 郵便確認書を 送付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郵便確認書を 送付한 경우 그 郵便確認서는 效力이 없으며 通知銀行은 그러한 郵便確認書を 電信으로 접수한 信用狀證書 또는 條件變更書와 대조할 義務가 없다.

이번 改正規則에서는 電信에 이어 郵便確認서가 送付된 경우에는, 그러한 郵便確認서는 아무런 效力이 없으며 또한 通知銀行은 電信文과 郵便確認書の 內容과 대조하여 점검할 義務가 없다는 條項을 追加하였다. 이러한 文言의 追加는 만약 郵便確認書の 內容이 電信과 다를 때 발생하는 問題點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電信에서 郵便確認書を 有效한 信用狀證書로 한다고 明示한 경우에는, 電信은 有效한 信用狀證書가 될 수 없으므로 發行銀行은 지체없이 通知銀行에 有效한 信用狀證書를 送付해 주어야 한다. 이와같이 本條項의 新設로 發行銀行이 電信으로 信用狀을 通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郵便確認書を 發送하는 불필요한 慣行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으며, 銀行間 國際業務의 效率性を 提高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電信內容과 郵便確認書와의 差異로 인하여 발생하던 當事者間的 紛爭을 效果的으로 解決할 수 있게 되었다.

參考文獻

- 梁暎煥·吳元爽·徐正斗, 信用狀論, 三英社, 1993.
- 桐谷芳和, 貿易取引と信用狀, 經濟法令研究會, 1992.
- 東京銀行 編, 貿易と信用狀, 實業之日本社, 1990.
- 小峯 登, 1974年 信用狀統一規則(上), 外國爲替貿易研究會, 1979.
- 伊澤孝平, 商業信用狀論, 有斐閣, 1958.
- 朝岡良平, 逐條解說 信用狀統一規則,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85.
- 舟木 凌, “書類の送達中紛失について”, 『國際金融』 第575號, 1976.
- 香川尚道, 外國爲替と貿易取引, 法律文化社, 1990.
- Charles del Busto, *Documentary Credits -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 Dann, Diane Furman, “Confirming Bank Liability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Whose Bank is it anyway?”, *Fordham L. Rev.*, Vol. 51, 1983.
- Davis, A.G., *The Law Relating to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3rd ed., Sir Issac Pitman & Sons Ltd., 1963.
- Ellinger, E.P., “Documentary Credits and Fraudulent Documents”, *Reported at Singapore Conferences on International Business Law*, 1983.
- ,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1970.
- , “The Relationship between banker and buyer under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Vol. 7, *Univ. of Western Australia Law Review*, 1956-66.
- Gutteridge, H.C. and Megrah, M.,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7th ed., 1984.

- Harfield, Henry, *Bank Credits and Acceptances*, 5th ed., The Ronald Press Company, 1974.
- Kozolchyk, Boris,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in the Americas*, Matthew Bender Company, 1976.
- Rubinstein, E., "The Issuer's Rights and Obligation under a Letter of Credit", *UCCLJ*, Vol. 7, 1984.
- Sassoon, Davis M., "Documentary Credit: The Applicant and the Advising Bank", *J.B.L.*, 1986, Jan.
- Ventris, F.M., *Bankers' Documentary Credits*, 2nd ed.,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83.
- White, James J. and Summer, Robert S., *Uniform Commercial Code*, Minnesota: West Publishing Co., 1988.
- Zahn, Johannes C.D., *Zahlung Und Zahlungssicherung Im Aussenhandel*, Walter de Gruyter & Co., 1976.